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하되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역별 인구·연령 및 의용소방대원 충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최 기 도)